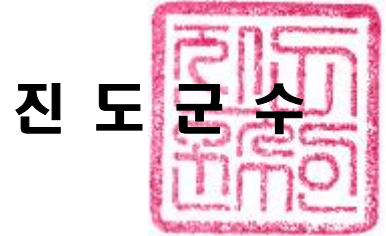
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

『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 등)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25일



1. 목 적

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 절개부분이 풍화되어 낙석발생 등 붕괴 우려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사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
2.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

가. 행정예고 기간 : 2020. 03. 25. ~ 2020. 04. 15.(21일간)

나. 의견제출 기간 : 2020. 03. 25. ~ 2020. 04. 15.(21일간)

다. 공고방법 : 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

라. 관련근거
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(예고대상)

3.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

가. 계비온 옹벽 설치

나.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

4. 의견제출
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도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기한 : 2020년 04월 15일까지

다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61-540-3499)

라. 제출처 : (우편 58915)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(진도군청 건설교통과)

마. 문의처 : 진도군 건설교통과 자연재난팀 ☎ 061)540-3487

바.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5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

지구명	위 치	지정개요			지정사유
		유형	등급	현황	
계	17개소				
진도읍 산월5지구	산월리 610-1	붕괴위험 지역	D	H=8m, L=30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진도읍 수유1지구	수유리 718-8	붕괴위험 지역	D	H=8m, L=40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군내면 녹진2지구	녹진리 산 279	붕괴위험 지역	D	H=4m, L=30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군내면 녹진5지구	녹진리 산 75-7	붕괴위험 지역	D	H=6m, L=68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고군면 유교2지구	오류리 산 81-1	붕괴위험 지역	D	H=9m, L=56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고군면 벽파1지구	벽파리 666-1	붕괴위험 지역	D	H=1.5m, L=42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고군면 벽파3지구	벽파리 134-2	붕괴위험 지역	D	H=2.7m, L=95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고군면 벽파5지구	벽파리 산 137	붕괴위험 지역	D	H=2.5m, L=90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고군면 내산11지구	내산리 산 285-2	붕괴위험 지역	D	H=3m, L=70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고군면 원포지구	원포리 2	붕괴위험 지역	D	H=7m, L=55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의신면 만길지구	만길리 산 99	붕괴위험 지역	D	H=12m, L=140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의신면 금갑1지구	금갑리 산123-328	붕괴위험 지역	D	H=4m, L=38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의신면 금갑2지구	금갑리 656-4	붕괴위험 지역	D	H=6m, L=50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
지구명	위 치	지정개요			지정사유
		유형	등급	현황	
의신면 금갑4지구	금갑리 산123-151	붕괴위험 지역	D	H=15m, L=250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인의 생명과 재산보호
의신면 금갑6지구	금갑리 산123-145	붕괴위험 지역	D	H=6m, L=80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인의 생명과 재산보호
의신면 금갑7지구	금갑리 산123-115	붕괴위험 지역	D	H=4m, L=70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인의 생명과 재산보호
임회면 용호지구	용호리 산99-5	붕괴위험 지역	D	H=3m, L=808m	붕괴위험지구 지정·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인의 생명과 재산보호

6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○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

- 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 - 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 - 다. 옹벽·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
 - 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 - 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- ※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진도군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야 함.

7. 문의처 : 진도군 건설교통과 자연재난팀(☎ 061-540-3487)

붙임 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(7건) 각 1부.

2. 의견제출서 양식 1부.

산월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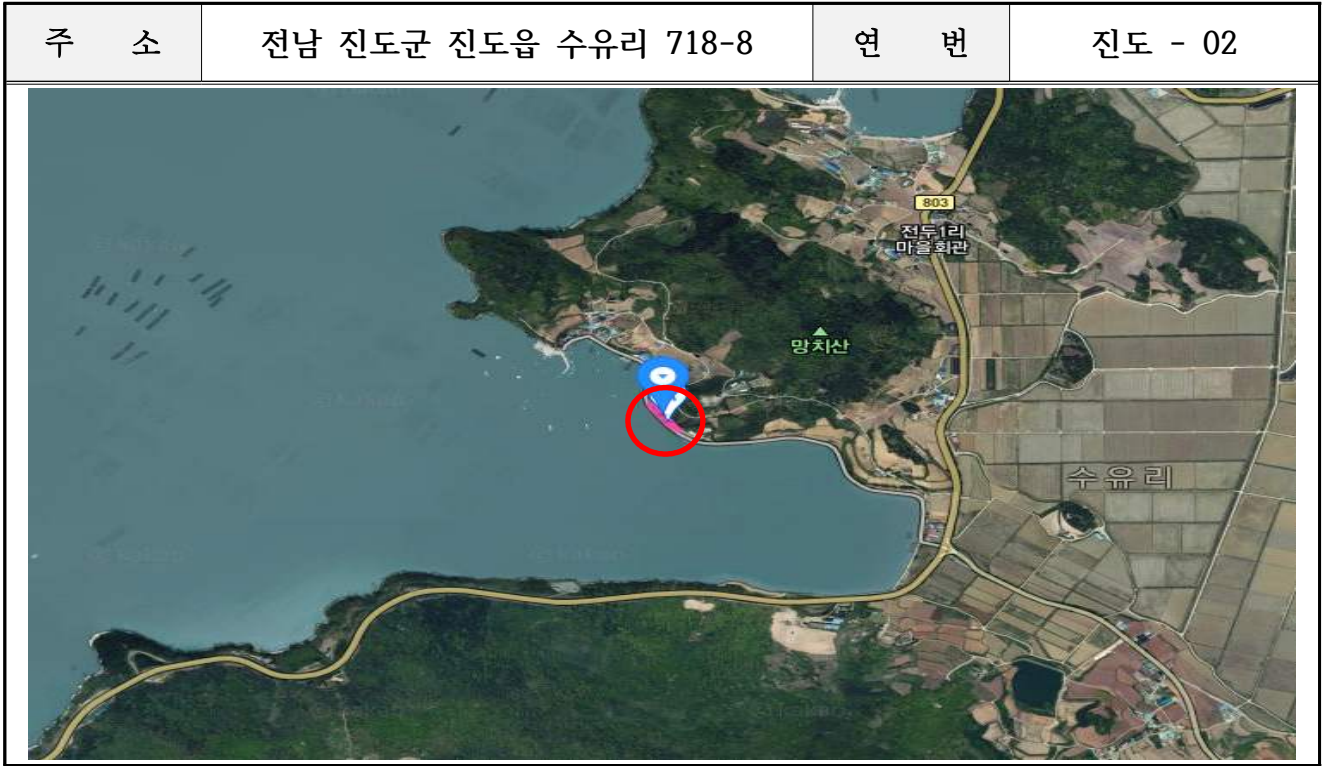


현장사진



수유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

현장사진



녹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

현장사진



녹진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

현장사진



유교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□ 위치도



□ 현장사진



벽파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

현장사진



벽파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□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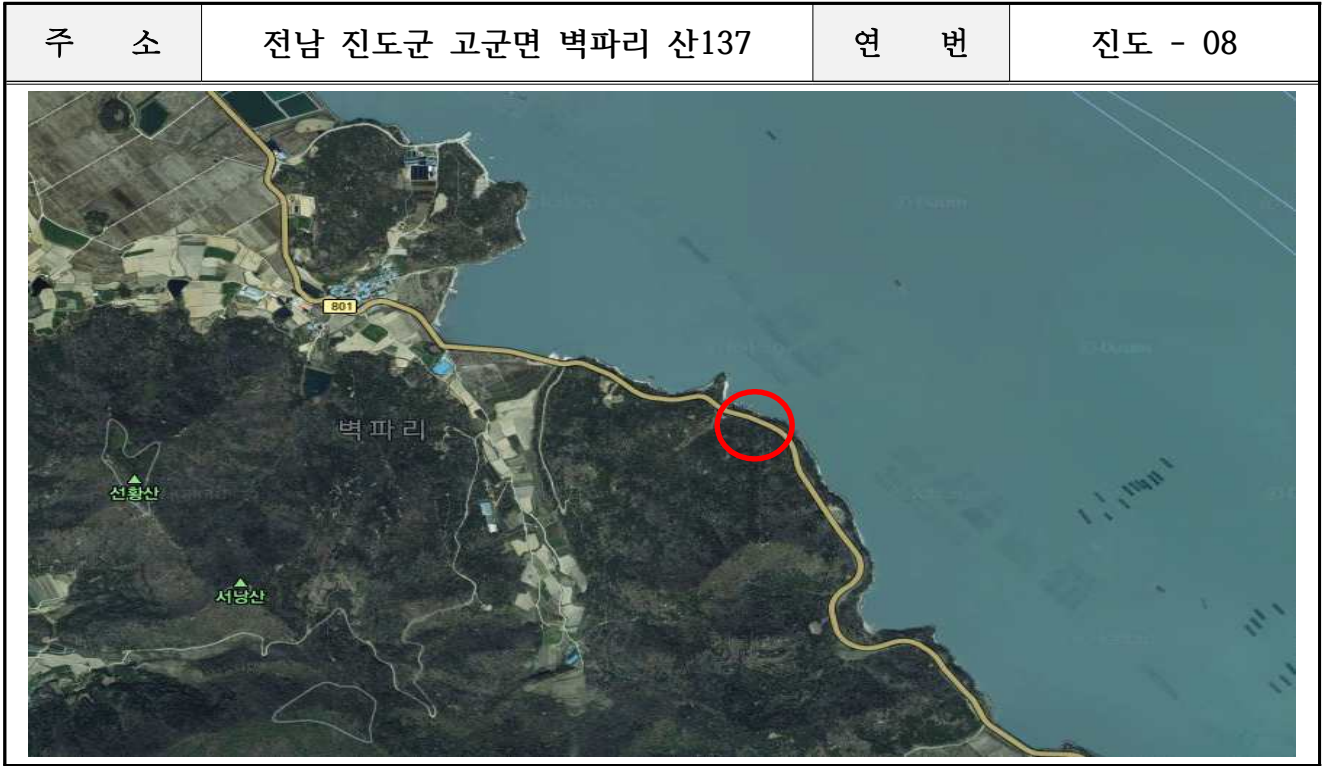


□ 현장사진



벽파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

현장사진



내산1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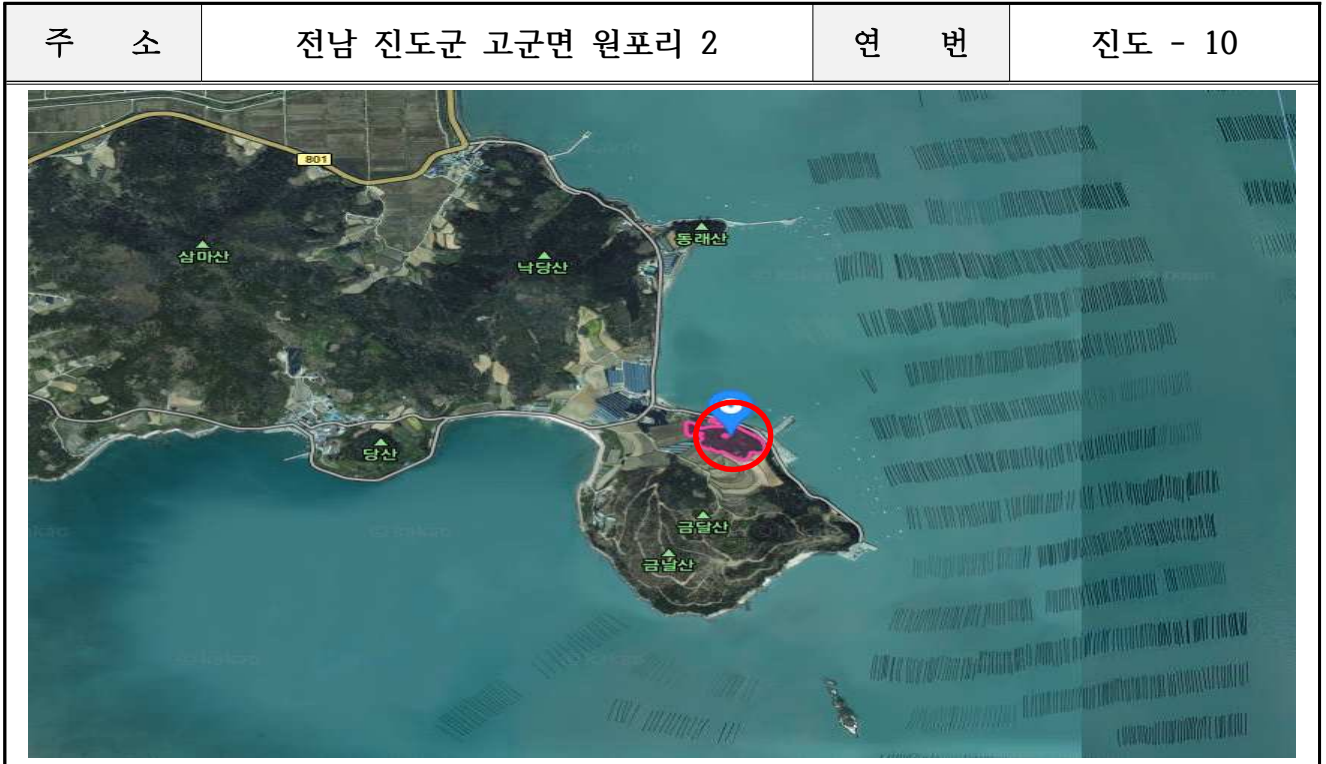


현장사진



원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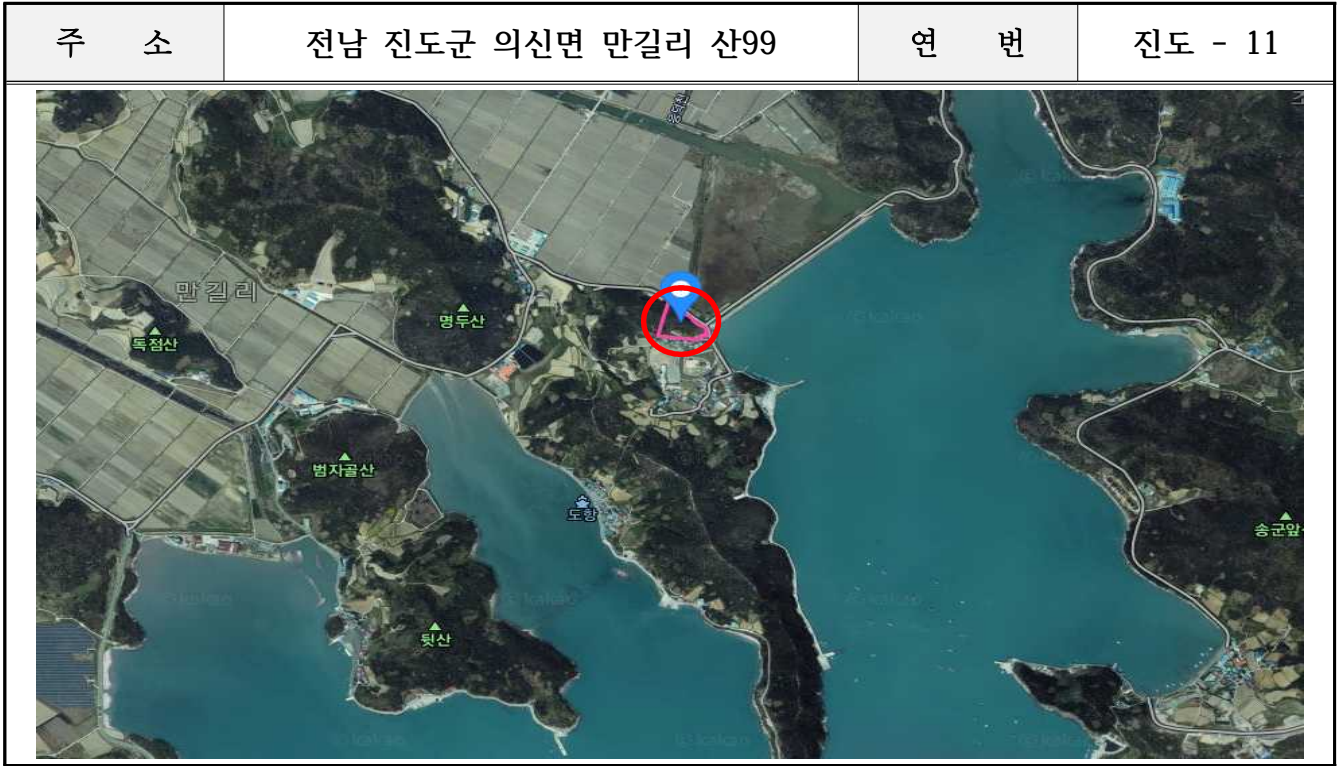


현장사진



만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□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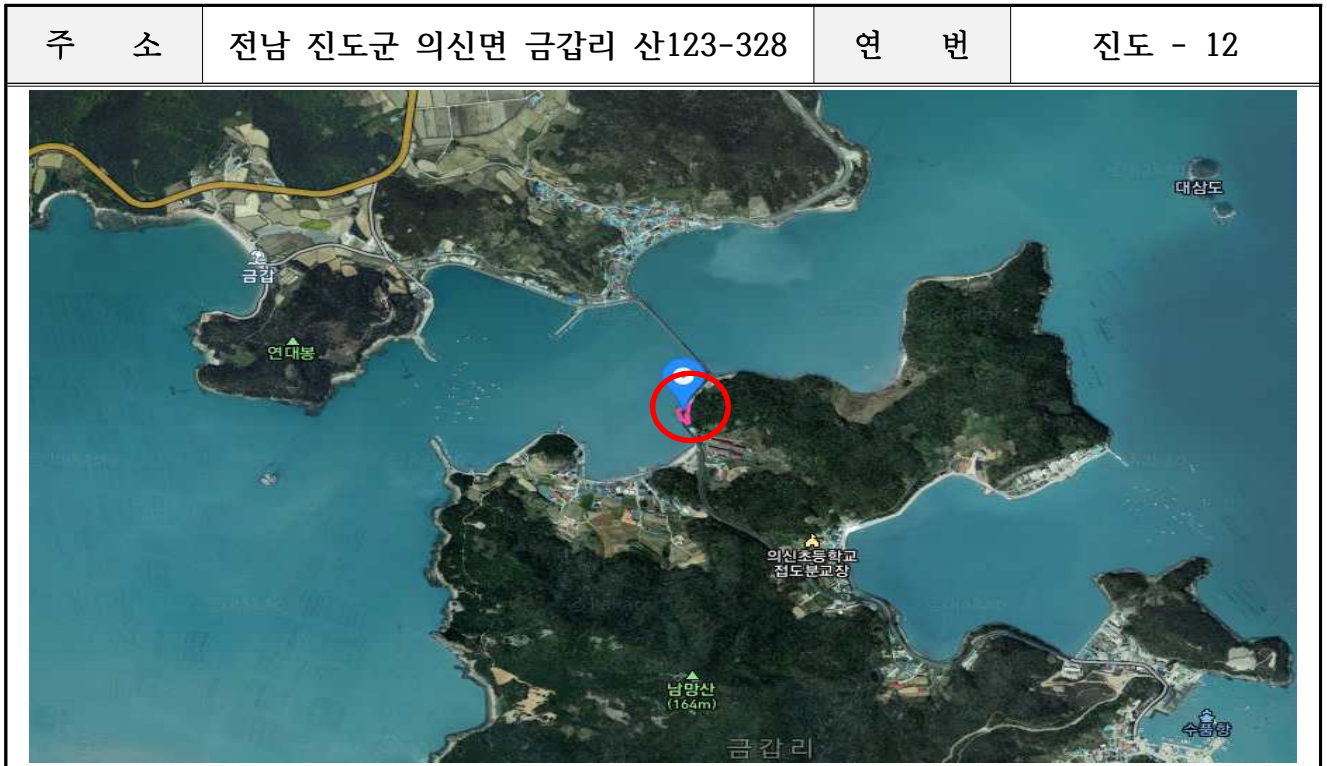


□ 현장사진



금갑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

현장사진



금갑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□ 위치도



□ 현장사진



금갑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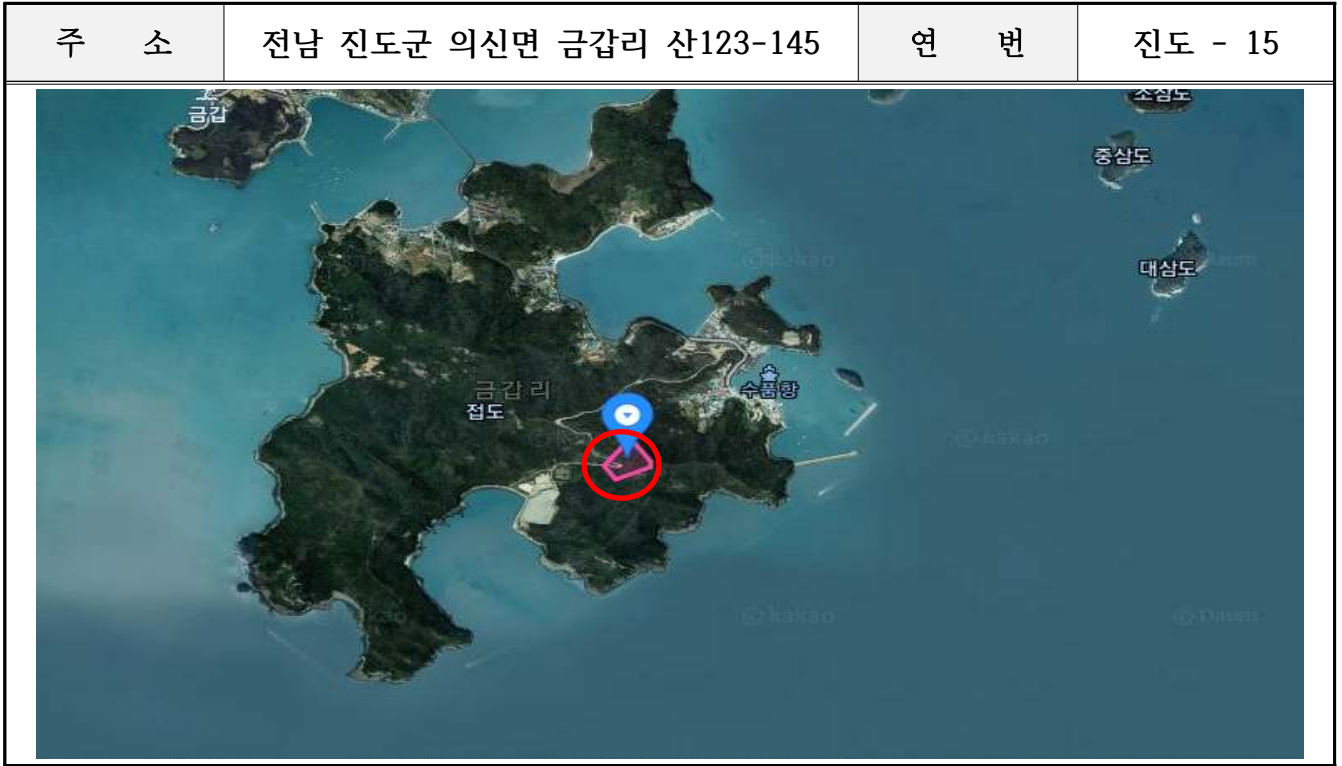


현장사진



금갑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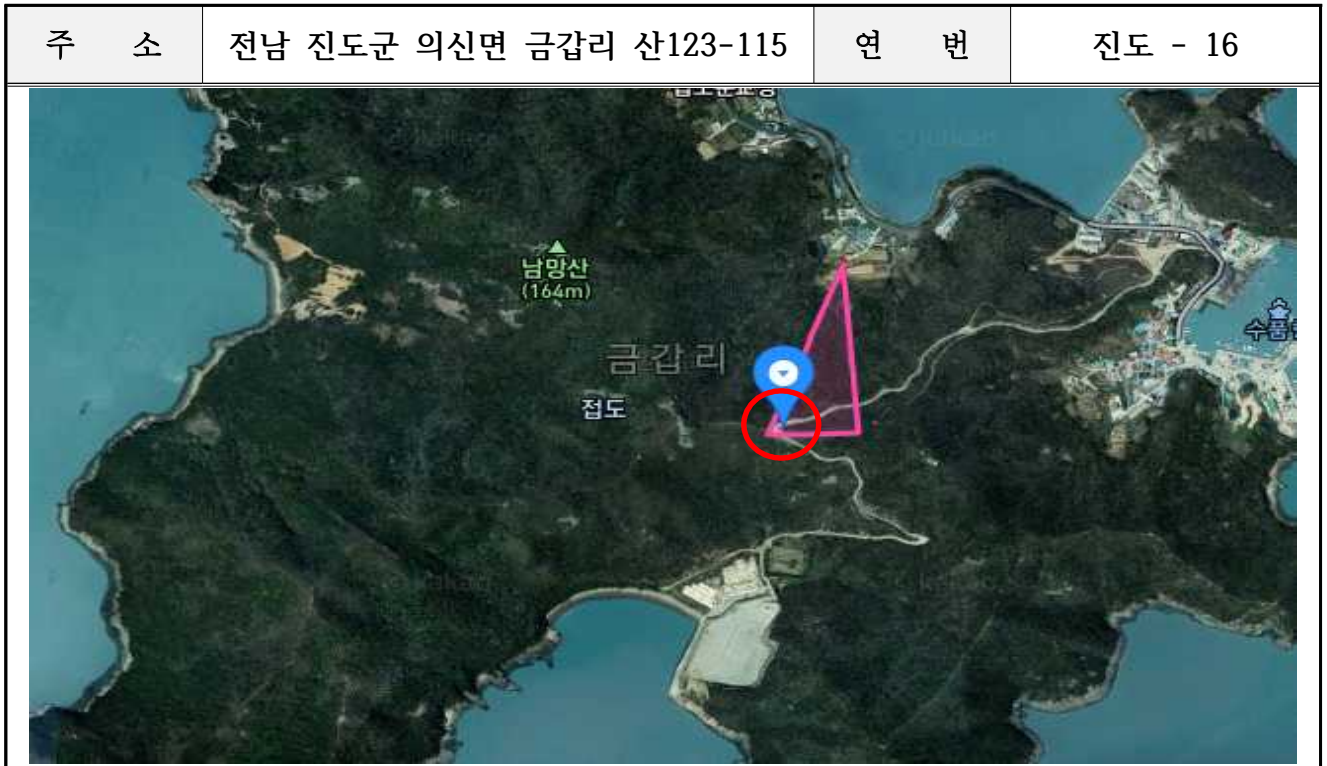


현장사진



금갑7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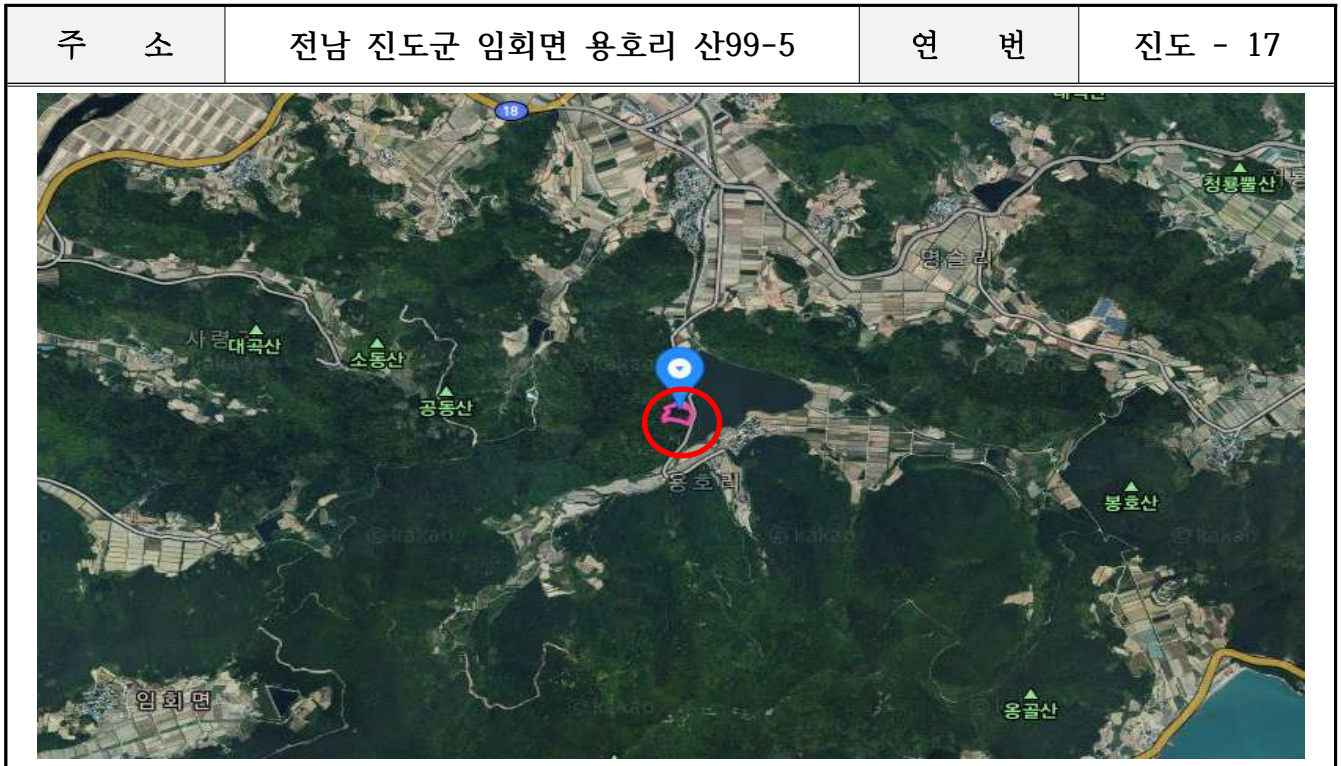


현장사진



용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

□ 위치도



□ 현장사진

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0 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진도군수 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